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곽향기, 김규남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도문열, 박상혁, 박 석,
박성연, 신복자, 심미경,
이상욱, 이새날, 이성배,
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조례의 명칭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,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(안 7조부터 제10조까지)

바.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가족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,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건강가정 지원)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
2.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
3.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
4.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

제7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2.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
3.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
4.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

③ 시장은 센터와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센터의 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, 관련 공무원,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센터의 위탁운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관기관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위탁·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민간단체 등 지원)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적용례)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(가족실태조사), 제6조(건강가정 지원)¹⁾ 등에 따라 비용발생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**기추진사업**²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 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그 외 규정³⁾은 현행 같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에 본 개정안에 의한 추가 비용발생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<서울시 가족센터 운영> : 1,178,385천원

⇒ 각종 자료 확인결과 서울시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

2) [기추진사업]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행 서울가족서베이를 시행하고 있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족보고서 또한 발행하고 있어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

3) 안 제7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, 제8조(센터의 조직), 제9조(센터의 지원), 제10조(센터의 위탁운영), 제11조(민간단체 등 지원) 등